

의안번호	2220110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6. 8. 21.
추계번호	26C3603

공궐 · 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 계획 수립 등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5,000만원(연평균 1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6조)	50	-	-	-	-	50	10

주: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계획의 수립)	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(궁능문화유산의 정기점검)	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9조(궁능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)	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원형, 역사적 변천, 가치 증진 방안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10조(공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	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제9조에 따른 조사·연구 결과 등의 자료와 그 밖의 공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국민이 공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5	안 제13조(공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전담조직)	국가유산청장은 공능문화유산의 안전관리, 시설물관리, 소방, 조경 등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·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6	안 제14조(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)	국가유산청장은 공능문화유산의 화재, 풍수해, 재난, 도난 및 훼손 등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·분석과 판단·전파,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7	안 제16조(공능문화유산 교육 및 홍보 등)	국가유산청장은 공능문화유산을 홍보하고, 대중이 공능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7조(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)	국가유산청장은 공능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을 돕기 위하여 연구·관리·교육·해설·홍보·안내 등 공능문화유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그에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8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	국가유산청장은 공능문화유산의 활용,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9조(국제 교류·협력)	국가유산청장은 공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,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정보·기술 교환, 전문인력 교류, 공동조사·연구,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20조(남북 공능문화유산의 교류)	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공능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지역의 공능문화유산 보호,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6조(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 계획의 수립)	○	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2	안 제8조(궁능문화유산의 정기점검)	×	- 실시 중
3	안 제9조(궁능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)	×	- 실시 중
4	안 제10조(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	×	- 실시 중
5	안 제13조(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전담조직)	×	- 실시 중
6	안 제14조(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)	×	- 실시 중
7	안 제16조(궁능문화유산 교육 및 홍보 등)	×	- 실시 중
8	안 제17조(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)	×	- 실시 중
9	안 제18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	×	- 실시 중
10	안 제19조(국제 교류·협력)	×	- 실시 중
11	안 제20조(남북 궁능문화유산의 교류)	×	-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대부분 사업 근거 마련 조문들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해당 사업을 실시 중이고, 제정안 시행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사업이 실시¹⁾될 가능성이 있으나, 이는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6년)
안 제8조(궁능문화유산의 정기점검)	- 궁능유적본부 소관 사적 정기조사(1억)
안 제9조(궁능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)	- 궁능 운영, 보존 정비, 활용 관련 연구 등(4억) - 궁능 운영, 관람 관련 연구 등(1억)
안 제10조(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	- 정보체계 구축·운영(3.1억)

1) 안 제20조(남북 궁능문화유산의 교류)를 근거로 새로운 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나,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6년)
안 제13조(공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전담조직)	- 직영사업단(18억)
안 제14조(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)	- 공능방재시스템 구축(189.5억)
안 제16조(공능문화유산 교육 및 홍보 등)	- 공능원 활용 콘텐츠 개발 운영(277.7억)
안 제17조(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)	- 공능방재인력 전문화교육(0.2억) - 직영사업단 보수 보수교육 실시(0.2억)
안 제18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	- 공능원 활용 콘텐츠 개발 운영(277.7억)
안 제19조(국제 교류·협력)	- 국외업무여비(0.6억)

자료: 국가유산청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공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계획 수립(안 제6조)

- 안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공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유사 사례와 정부의견을 참고하여 공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함
 - 국가유산청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“문화유산 기본계획 및 부서별 중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”을 위하여 2025년도에 9,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고, 2021년에는 “세계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연구”에 3,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
 - 국가유산청은 “공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”의 경우 위 2개 계획 수립 예산의 평균값인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[표 3]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
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6조)	50	-	-	-	-	50

자료: 국가유산청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